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신제품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022.1.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신고사항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당해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농업기계 제원을 신고하고, 신제품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 농업기계의 제원 및 거래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한 후 신고(중고거래 신고도 동일)

나. 농업기계 폐기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확인서를 발급

다.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 평가액은 폐기 농업기계의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곱칠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폐기비용은 농업기계의 중량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

- 폐기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신청인에게 초과비용을 징수 가능

라.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 농업기계 폐기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은 폐기일 기준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입·출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마.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 신설)

- 농촌진흥청장은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고, 결과를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재활용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함

바. 농업기계 중고거래 신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의9 신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는 농업기계의 중고 거래사실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사. 농업기계의 교환·환불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서면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교환·환불 대상의 농업기계 구조와 장치 종류, 하자 재발 사실의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하자 농업기계 소유자는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통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접수 사실을 통보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도록 함

아.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별표 1, 별표 4, 별표 15 개정)

-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방제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등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합검정과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의 조정 등(안 별표 1 및 별표 4 개정)
-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전문성 존중을 위한 자격요건 정비 (별표 15 개정)

자.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별표1 8, 17.)

- ‘제상장치’를 ‘제상장치(서리 제거장치)’로 변경(별표1 8. 농산물 저온저장고)
- ‘권취’를 ‘권취(호수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로 ‘정치상태’를 ‘정치상태 (장치가 고정 설치된 상태)’로 변경(별표1 17. 농업용 방제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기계 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2. 원동기 배출가스인증서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4. 농업기계 외관도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품 농업

기계 판매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제원 및 판매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장(이하 “농정원장”이라한다)에게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역농협, 사후관리업자(판매자), 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농정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 등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은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해지)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정원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자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를 즉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트랙터 등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요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 하여서는 안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업기계 폐기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고 시 농업기계(중량, 원동기 및 본기 제조번호 포함)
2. 분해작업 과정
3. 폐기상태 농업기계(제조번호가 각인된 차대를 포함)
4. 농업용트랙터 보호구조물 폐기상태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의 입고 시 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폐기 신청인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에 대해서는 제14조4제3항에 따른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입·출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지정·변경)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지정·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

2. 대표자

3. 사업장 주소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8의4와 같다.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은 별표8의5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취소하였거나 업무정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의 중고 거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해당 농업기계를 중고거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
2. 수출신고필증(수출에 한함)

제16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내용이 있을 것(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업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이 있을 것(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농업기계제조업자 등의 대표자 및 주소

6. 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 주행장치(차동장치, 차축, 차륜, 타이어 등)

4. 유압장치
5. 조향장치
6. 제동장치
7. 완충장치(현가장치)
8. 농업기계 주행과 관련된 배터리
9. 농업기계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10.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한다)

제16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하자농업기계 소유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재발 사실을 통보하려면 별지 제25호서식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제조업자들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우편 등으로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의 범위란 중 “등의”를 “등”으로, 같은 란 중 “난방하기 위한 온풍식, 온수식, 온풍·온수겸용식 난방기로”를 “난방하는 기계로서”로, 같은 란 중 “내에”를 “내로”로, 같은 란 중 “구조의”를 “구조를 가진”으로, 같은 란 중 “난방기계”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난방기”로, 같은 란 중 “전기안전 성적서”를 “전기안전성적서”로, 같은 란 중 “해당한다)만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조용 열원과 건조장치 등을 갖추고 고추, 약초, 담배 또는 버섯 등의 농·임산물(곡물과 유체는 제외)을 건조하는 기계(냉장겸용 포함)

별표 1 제8호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상장치(서리 제거장치), 냉각장치 및 온도조절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저온저장기계로서 분해없이 지면과 분리되는 구조로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고 저장용적이 50m³ 이하(바닥면적 10.56m² 이하)인 것

별표 1 제10호의 범위란 중 “적재함”을 “최대출력 18kW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으로, 같은 란 중 “등을 운반하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주식 운반차로 최대출력 18kW 이하의 농업용 엔진 또는 농업용 전동기가 부착된 것”을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의 자주식 운반차”로, 같은 란 중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란(중전의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제17호가.) 가 목 중 “등을 갖추고”를 “등을 갖추고 권취(호스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 긴막대 등의 장치로”로 하고, 같은 란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바목 중 “정치상태”를 “정치상태(장치가 고정 설치된 상태)”로 하고, 같은 란 아 목 중 “연무기:”를 “농업용연무기:”로 하며, 같은 표 제29호나목 중 “절단하거나”를 “베어 수확하거나 수확한 엽채류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수집하는”을 “분리된 과실을 수집하는”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예취 밧”을 “베는 동시에”로 한다.

별표 4 제1호너목 중 “부착형”을 “부착형(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어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저목을 어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동력수확기(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에 한함)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 중 “졸업자로서”를 “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 2)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이상 졸업자로서”를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 2)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된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5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 신청된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6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가 폐기되는 경우 적용한다.

제5조(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9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의 중고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제14조의7제5항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규 모
가. 시 설	1) 면 적	•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야적장 등을 포함할 것	1,500㎡ 이상
		- 해체작업장	200㎡ 이상
		- 부품창고	200㎡ 이상
	2) 장 비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견인원치크레인운반차	1대이상
		• 인양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중 선택	1대이상
		• 계량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1대 이상
		• 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시간 이상의 파쇄기, 압축기, 절단기 중 선택	1대이상
	나. 인 력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장비 설비·설치분야 기사 및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농기계분야(일반기계분야 포함)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명 이상 ※ 세부기준 ①의 자격을 갖춘 1명 이상 확보
다. 폐유(폐수) 보관 시설	• 폐유(폐수)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 시설	600 L 이상 밀폐 용기 또는 시설	

주) 가목의 2)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8의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조의6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9조의6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법 제9조의6 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9조의6 제1항제5호	경고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지정취소

※ 마목의 “경고” 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제원 신고서

제조(수입) 업자 (신고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농업기계 제 원	기 종 명	형식명(모델명)	
	규 격	제 조 번 호	
	검 정 번 호	제 조 연 월 일	
	최초농업기계 제작자	출 고 일 자	수 입 일 자 (수입품에 한함)
부 착 원동기 제 원	형식명	원동기코드	
	규격(최대출력)	kW	제 조 번 호
	제조사	연료탱크 용량	
	사용연료	정격회전속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작성 방법

음영 처리된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1.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1부 2. 원동기 배출가스인증서 1부(해당기종에 한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4. 농업기계 외관도 1부
-------------	--

유의 사항

1. 농업기계 신고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본 신청서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가 작성·등록 하여야 합니다.
2. 수입 농업기계의 경우 출고일자와 수입일자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농업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자용)

판매위탁자 (판매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농업인 등 (구매자)	대표자 또는 농업인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연락처(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매(거래)일자			
거래 농업기계	기 종 명	형식명(모델명)		
	규 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제조연월일		
	최초농업기계 제작사	출고일자	수 입 일 자 (수입품에 한함)	
부 착 원동기	형식명	원동기코드		
	규격(최대출력)	kW	제 조 번 호	제 조 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작성 방법

음영 처리된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자동입력)

신청인 구비서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등)
-------------	-------------------------

유의 사항

1. 농업기계 신고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본 신청서에 따라 판매위탁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등)가 작성·등록 하여야 합니다.
2. 농업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해지)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실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근무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 소속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판매업자(사후관리업자 등) [] 지역농협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	
사용자 등록목적	[] 제원 신고, []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 [] 중고 거래 신고, [] 폐기 신고		
신청사유	1. 신규 업무담당	2. 사용자 변경(전임자 업무변경 또는 퇴사 등) - 전임자 성명 : (생년월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 및 같은조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역농협, 사후관리업자(판매자), 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역농협, 사후관리업자(판매자), 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실 확인

유의사항

-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
 1.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받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의 대표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는 자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5.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농업기계 폐기사실 신고서

폐기신고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 업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폐기일	
폐기신고 대상 농업기계 제원	기 종 명	형식명(모델명)	
	규 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제조연월일	
	최초농업기계 제작사	출고일자	수 입 일 자 (수입품에 한함)
원동기	형식명	원동기코드	
	규격(최대출력)	kW	제조번호 제조사
폐기의뢰자 (최종 소유 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폐기결과	폐기물 중량(kg)	재활용 부품 내역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작성 방법	
음영 처리된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자동입력)	
신청인 제출서류	다음 각호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 1. 입고 시 본기(중량, 원동기 및 본기 제조번호 포함) 2. 분해작업 과정 3. 폐기상태의 농업기계(제조번호 확인이 가능 할 것) 4. 농업용트랙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농업용 트랙터에 한함)
유의 사항	
1. 농업기계 신고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본 신고서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작성·등록 하여야 합니다. 2. 농업기계를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9조제1항제7호 및 같은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서

폐기의뢰자 (최종 소유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폐기 농업기계	기종명		제조(공급)사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원동기 형식명 (원동기코드)	
	입고 시 중량		폐기물 중량	
농업기계 해체재활용 업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기 정보	입고 일			
	폐기 일			
	폐기방법	◦기대 : <input type="checkbox"/> 압축 <input type="checkbox"/> 파쇄 <input type="checkbox"/> 절단 <input type="checkbox"/> 분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차대 : <input type="checkbox"/> 압축 <input type="checkbox"/> 파쇄 <input type="checkbox"/> 절단		
	재활용부품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폐기신청인 ○○○ 귀하

유의사항

1.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서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작성·등록 하여야 합니다.
2.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지정·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전화번호)	
사업장 개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건축도면(설계도면) 1부 2. 4대보험 가입서류 및 자격증 사본 1부 3.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1부 4. 사업장 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 1부
-------------	--

유의사항

- 지정사항 중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1. 상 호 명 : (사업장 주소)

2. 대 표 자 : (생년월일:)

3. 사업 개시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관리대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	기준위반		결과 처분	청문 일시	동일항목 위반 횟수 <small>(업무정지 처분에 한함)</small>
				기준 위반사항	적발일시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신고서

신고자	조합명 또는 사후관리업소명 또는 중고농업기계수출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소유자 변경일				
중고거래 대상 농업기계 제원	기 종 명	형식명(모델명)				
	규 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제조연월일				
	최초농업기계 제작사	출고일자	수출일자 (수출품에 한함)			
종 전 소유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현 재 소유자	국내 거래의 경우	성명 또는 상호(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또는 주소	
	사업장소재지 또는 주소			수출의 경우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고농기계수출업소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7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작성 방법

음영 처리된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
|-------------|--|
| 신청인
구비서류 |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
2. 수출신고필증(수출에 한함) |
|-------------|--|

유의 사항

1. 농업기계 신고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본 신청서에 따라 지역농협조합, 사후관리업자, 중고농기계수출업자가 작성·신고 하여야 합니다.
2. 농업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등)</u></p> <p>① <u>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기계 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농업기계 검정성적서</u> <u>2. 원동기 배출가스인증서</u> <u>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u> <u>4. 농업기계 외관도</u> <p>② <u>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u></p>

별지 제15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제원 및 판매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장(이하 “농정원장”이라한다)에게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역농협, 사후관리업자(판매자), 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농정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 등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은 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해지)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정원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자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를 즉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등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

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9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요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 하여서는 안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농업기계 폐기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고 시 농업기계(중량, 원동기 및 본기 제조번호 포함)
2. 분해작업 과정
3. 폐기상태 농업기계(제조번호가 각인된 차대를 포함)
4. 농업용트랙터 보호구조물 폐기상태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기계 폐기사실

<신 설>

<신 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의 입고 시 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폐기 신청인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에 대해서는 제14조4제3항에 따른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입·출고 관리

<신 설>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지정·변경)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지정·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

2. 대표자

3. 사업장 주소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8의4와 같다.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

<신 설>

<신 설>

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은 별표8의5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취소하였거나 업무정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의 중고 거래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해당 농업기계를 중고거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

<신 설>

2. 수출신고필증(수출에 한함)

제16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말한다.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내용이 있을 것(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업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이 있을 것(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농업기
계제조업자등의 대표자 및 주
소

6. 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농업기
계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농업
기계제조업자등이 법 제11조
의2제1항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
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
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
력전달장치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 주행장치(차동장치, 차축, 차
륜, 타이어 등)

4. 유압장치

5. 조향장치

6. 제동장치

7. 완충장치(현가장치)

8. 농업기계 주행과 관련된 배
터리

9. 농업기계 주행과 관련된 전
기·전자장치

<신 설>

10.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한다)

제16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하자농업기계 소유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재발 사실을 통보하려면 별지 제25호서식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우편 등으로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